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			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계약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계약자 주민등록번호						
	주소(법인소재지) 계약자 등본상 주소	(휴대)전화번호 계약자 연락처(휴대전화)					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명의 예금(적금 등) 원 ④ 증여·상속 증여 및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 원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 부모, 자녀) [] 그 밖의 관계(형제, 친인척 등)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명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매각 등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현금·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본인 자산 원 [] 보유 현금 <small>미래소득,</small> [] 그 밖의 자산(종류: 금융상품 해지금 등)					
	차입금 등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금, 보증금 회수 등 원	⑦ 소계 [②+③+④+⑤+⑥]의 합계 금액 원					
	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+ 신용대출 + 그밖의 대출 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주택담보대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 원</td> </tr> <tr> <td>신용대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 신용대출 원</td> </tr> <tr> <td>그 밖의 대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중도금대출(60%) 금액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 집단대출)</td> </tr> </table>	주택담보대출	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 원	신용대출	개인 신용대출 원	그 밖의 대출
	주택담보대출	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 원						
	신용대출	개인 신용대출 원						
	그 밖의 대출	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중도금대출(60%) 금액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 집단대출)						
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제외한 그 외 주택 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							
	⑨ 임대보증금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임대료 받을 임대보증금액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원						
	⑪ 그 밖의 차입금 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금액 원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 부모, 자녀) [] 그 밖의 관계(형제, 친인척 등)	⑫ 소계 [⑧+⑨+⑩+⑪]의 합계 금액 원						
	⑬ 합계	[⑦+⑫]의 합계 금액 원			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번 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						
	⑮ 계좌이체 금액	⑬번 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				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작성 생략 원				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 생략 원						
지급 사유 (작성 생략)					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해당 입주예정자 칸 체크 (입주 예정 시기: 작성 생략)	[] 임대 ⑨번 기재시 체크 [] 그 밖의 경우 작성 생략				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**작성월생략** 일

제출인

계약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